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213 발의연월일: 2022. 11. 11.

발 의 자:이철규·박정하·이인선

최영희 · 김학용 · 정운천

서일준 • 태영호 • 배현진

구자근 • 강기유 • 최승재

윤한홍 • 권성동 • 김정재

김도읍 · 김선교 · 엄태영

한기호 · 이양수 · 송석준

윤상현 • 권명호 • 노용호

양금희 • 이용호 • 윤두현

김석기 • 박대수 • 이종성

유주경 • 장동혁 • 정희용

의원(33인)

제안이유

최근 원재료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다수의 수탁기업은 위탁기업과의 거래상 지위에 따른 협상력 차이로 인하여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음.

납품대금 연동제가 도입되면 거래 상대방 모두에게 이로울 수 있다는 경제학적 논의와 함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일부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다양한 업종·품목과 기업간 거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이 되는 원재료와 조정요 건 등을 정하도록 하는 설계가 필요함.

한편 현행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중소기업계는 거래단절 등이 우려되어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신청하기 어렵다는 것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음. 따라서 수탁기업의 신청 없이도 수탁·위탁기업 간 반드시 협의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는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납품대금 연동제의도입이 필요함.

현장의 다양한 거래 관계를 고려하여 일률적 규제 적용을 하지 않도록, 소액계약이나 단기계약, 기업 간 합의에 의한 경우 등 납품대금 연동제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유를 규정하되, 동시에 탈법행위 금지 등 실효성 제고 장치가필요함.

이에, 모든 수탁·위탁거래에서 위탁기업이 발급하여야 하는 약정서의 기재사항으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세부내용은 기업간 협의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수탁·위탁거래에서 원재료 가격의 변동분이 납품대금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하여 수탁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상생 문화 확산 및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주요 원재료"를 납품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로 정하고, "납품대금 연동"을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 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으로 정 함(안 제2조제12호 및 제13호 신설).

- 나.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함(안 제21조제1항제4호 신설).
- 다.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로 정하는 경우,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21조제3항 신설).
- 라.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위탁기업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1조제4항 및 제43조제3항제1호의2 신설).
- 마.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을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납품대금연동 확산 지원본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 신설).
- 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는 대상에 소속기관의 장을 추가함(제38조제2항).

법률 제 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2. "주요 원재료"란 수탁·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 중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으로 협의하여 정한 원재료를 말한다.
- 13. "납품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1조제1항 중 "그 위탁의 내용, 납품대금의 금액, 대금의 지급 방법, 지급기일, 검사 방법, 그 밖에 필요한"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 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위탁의 내용
- 2. 납품대금(지급 방법 및 지급기일을 포함한다)
- 3. 납품한 물품등의 검사 방법
- 4.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 물품 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5. 그 밖에 약정서에 적어야 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위탁기업은 약정서에 제1항제4호의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기 위하여 수탁기업과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기업은 약정서에 제1항제4호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명시적으로 적어야 한다.
- 1. 위탁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2.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경우
- 3.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4.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 ④ 위탁기업은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2조의3(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선정·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은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및 납품대 금 연동 확산에 기여한 자(이하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이라 한 다)를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 ②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의 선정 방법, 절차 및 지원시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의4(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이하 "연동지원본부" 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연동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 2. 납품대금 연동의 도입 및 조정 실적 확인
 - 3. 납품대금 연동 관련 교육 및 컨설팅
 - 4. 그 밖에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동지원본부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동지원본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⑤ 연동지원본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2.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제21조제1항제4호의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수탁기업의 책임질 사유가 없음에도 물품등의 제조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제28조제1항제1호 중 "약정서"를 "약정서, 납품대금 연동"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를 "소속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로 한다. 제43조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1조제4항을 위반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만, 제21조제1항제4호·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제4호·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2. "주요 원재료"란 수탁·위</u>
	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
	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
	<u>상인 원재료 중 위탁기업과</u>
	<u>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의</u>
	대상으로 협의하여 정한 원재
	료를 말한다.
<u><신 설></u>	13. "납품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 이내
	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
	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1조(약정서의 발급) ① 위탁기	제21조(약정서의 발급) ①
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	
를 위탁할 때에는 지체 없이 <u>그</u>	<u></u> 나
위탁의 내용, 납품대금의 금액,	음 각 호의
대금의 지급 방법, 지급기일, 검	
사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그 수탁기업에 발급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

- 1. 위탁의 내용
- 2. 납품대금(지급 방법 및 지급 기일을 포함한다)
- 3. 납품한 물품등의 검사 방법
- 4.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 물품 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5. 그 밖에 약정서에 적어야 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
- ② 위탁기업은 약정서에 제1항 제4호의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기 위하여 수탁기업과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기업은 약정서에 제1항제4호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

<신 설>

② (생 략) <신 설>

- 에 명시적으로 적어야 한다.
- 1. 위탁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2.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 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경우
- 3.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금액 이하인 경우
- 4.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 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 ④ 위탁기업은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 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의 적용을 피하려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현행 제2항과 같음)
- 제22조의3(납품대금 연동 우수기 업 선정·지원) ① 중소벤처기 업부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의 확 산을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 우 수기업 및 납품대금 연동 확산 에 기여한 자(이하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신 설>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수립하 여 추진할 수 있다.

- ②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의 선정 방법, 절차 및 지원시책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 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의4(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 기업부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이하 "연동지원본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연동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 2. 납품대금 연동의 도입 및 조

 정 실적 확인
 - 3. 납품대금 연동 관련 교육 및 컨설팅
 - 4. 그 밖에 납품대금 연동의 확 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

하는 사항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동 지원본부가 제2항 각 호의 사업 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동 지원본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 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 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 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 족하지 못하는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1개월 이상 수행 하지 아니한 경우
- ⑤ 연동지원본부의 지정 및 지 정 취소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준수사항) ① 위탁기업은 제25조(준수사항) ①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

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신 설>

- 2. ~ 14. (생략)
- ② ~ ④ (생 략)
- 제28조(분쟁의 조정)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위탁기업·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분쟁 조정을 요청할수 있다.
 - 1. 제21조에 따른 <u>약정서</u> 및 물 품 수령증에 관한 사항
 - 2. ~ 5. (생 략)
 - ② ~ ⑤ (생 략)

제3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 제3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

·.
1. (현행과 같음)
1의2.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제21조제1항제4호의 납품
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이
행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수탁
기업의 책임질 사유가 없음에
도 물품등의 제조 위탁을 임의
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 1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8조(분쟁의 조정) ①
1 <u>약정서, 납품대금</u>
<u> 연동</u>
2. ~ 5.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위탁) ① 삭 제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업종별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생략)

제43조(과태료) ① • ② (생 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생략)

<신 설>

- 2. (생략)
- ④・⑤ (생 략)

위탁)
2
<u>소속</u>
<u>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u>
·특별자치시장·도지사
<u>.</u>
③ (현행과 같음)
에43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1. (현행과 같음)
1의2. 제21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